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

의 안 번 호 319

제출년월일 : 2020.11.20. 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2021년도 평창군기금조성 규모는 총 7개 기금 13,82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,926백만원이 감소하였음.
- 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기	금	명	2020년도말 조 성 액@	2021년 운용계획		2021년도말	증 감
				수입 (b)	지출 ⓒ	조 성 액 d=a+b-c	e=d-a
합	계(7	건)	15,748,308	1,793,242	3,719,043	13,822,507	△1,925,801
통합재정안정화 기금(통합계정)			6,260,152	93,783	873,752	5,480,183	△779,969
체육	-진흥	기금	4,267,147	44,298	635,000	3,676,445	△590,702
식품	품진흥기금		125,117	51,038	50,291	125,864	747
추년	물처리 변지역주 1원기금	스민	209	60,031	60,000	240	31
재닌	난관리기금		1,418,740	1,021,635	1,200,000	1,240,375	△178,365
옥외국	광고발전기금		103,321	17,018	0	120,339	17,018
	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		3,573,622	505,439	900,000	3,179,061	△394,561

- ※ 수입 :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/ 지출 :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
- ※ 융자금은 지출 ⓒ에 포함하여 계상함.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 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